

# 사립대학재정통계설명자료

2024. 12.



한국사학진흥재단  
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

☐ 통계 개요

승인번호	통계명칭	통계종류
418001	사립대학재정통계	일반통계

☐ 보고연혁

구분	내용
보고연혁	<p>최초작성년도 : 2014</p> <p>&lt;주요연혁&gt;</p> <p>2008.01.18 : 교육정보공시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선정</p> <p>2013.10.15 :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</p> <p>2013.11.11 : 사립대학재정통계 작성승인</p> <p>2013.11.24 : 사립대학재정통계 작성변경 승인 - 작성사항 항목 추가(주요비율 분석 등)</p> <p>2015.01.13 : 2014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16.01.07 : 2015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16.12.28 : 2016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17.11.30. : 사립대학재정통계 결과표 변경 승인 - 지표 해설 변경, 결과표 변경 등</p> <p>2017.12.29. : 2017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18.12.06.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변경 및 지표명 수정 등</p> <p>2018.12.31 : 2018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19.03.21.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추가 및 지표명 수정 등</p> <p>2019.12.31 : 2019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20.12.31 : 2020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21.04.01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추가 및 지표명 수정 등</p> <p>2021.12.31 : 2021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22.12.30 : 2022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 <p>2023.03.23 :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- 결과표 추가</p> <p>2023.12.28 : 2023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</p>

구분	내용
	2024.03.27. : 2024 사립대학재정통계 통계작성 변경 승인 2024.12.24. : 2024 사립대학재정통계 공표

### □ 조사 목적 및 활용

구분	내용
보고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여 고등교육 정책수립 및 다양한 연구·조사 활동 등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방안 제시</li> <li>○ 사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도 제고</li> </ul>
통계(활용) 분야 · 실태	교육

### □ 작성유형

구분	내용
작성유형	보고통계

### □ 조사대상

구분	내용
보고대상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동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</li> <li>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산학협력단</li> <li>○ 「사립학교법」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</li> </ul>
보고대상 지역	전국
보고단위 및 보고대상 규모 (2024년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결산) 사립대학 190개교, 전문대학 124개교</li> <li>○ (산학협력단) 사립대학 150개교, 전문대학 123개교</li> <li>○ (대학 교육시설) 사립대학 264캠퍼스, 전문대학 137캠퍼스</li> <li>○ (수익용기본재산) 대학법인 187개, 전문대학법인 100개</li> </ul>

구분	내용
적용분류	해당 없음

#### ☐ 보고항목

구분	내용
보고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 및 학교법인 예·결산</li> <li>○ 산학협력단 예·결산</li> <li>○ 재무 주요 지표 통계 현황</li> <li>○ 대학 교육시설 현황</li> <li>○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</li> </ul>

#### ☐ 공표

구분	내용
공표주기	1년
공표시기	작성기준년도 12월
공표범위	전국
공표방법 및 URL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언론보도(보도자료)</li> <li>○ 전산망 등록(<a href="https://support.kasfo.or.kr">https://support.kasfo.or.kr</a>)</li> <li>○ 간행물 발행(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)</li> </ul>

#### ☐ 보고기간

구분	내용
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·결산) 3월1일~익년 2월 말</li> <li>○ (대학교육시설) 4월 1일</li> <li>○ (수익용기본재산) 4월 1일</li> </ul>

구분	내용
보고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산) 2월</li> <li>○ (사립대학 및 산학협력단 결산) 5월</li> <li>○ (대학교육시설) 4월</li> <li>○ (수익용기본재산) 6월</li> </ul>
조사주기	1년
계속여부	계속통계

### ☐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계연도 결산일 기준 미제출된 대학의 자료는 반영하지 않음</li> <li>○ 자료 수치는 반올림 처리 등으로 인하여 세부항목의 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</li> <li>○ 본 간행물의 주요 비율 산정은 재정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이므로, 타 기관의 유사 동일항목과 산출방식이 다를 수 있음(주요 비율별 공식 참고)</li> </ul>

### ☐ 용어 정의

구분	내용
설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국립) 국가가 설립·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해당</li> <li>○ (공립)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가 해당</li> <li>○ (사립)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가 해당</li> </ul>
학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학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중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제30조에 따른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이 아닌 모든 고등교육기관</li> <li>○ (전문대학)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2년 이상 3년 이하의 수업연한을 두는 고등교육기관</li> <li>○ (산업대학)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술,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</li> <li>○ (대학원대학)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고등교육기관</li> </ul>

구분	내용
학생규모 (재학생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립대학) 5천명 미만, 5천명 이상, 1만명 미만, 1만명 이상</li> <li>○ (사립전문대학) 2천명 미만, 2천명 이상, 4천명 미만, 4천명 이상</li> </ul>
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지경계선내 및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한 학교 소유의 교육·연구 목적 토지(시설 결정·미결정지 포함)</li> <li>※ 농장·학술림·사육장·목장·양식장·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는 제외</li> </ul>
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지경계선내 위치한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건물(교육기본+지원+연구시설)</li> <li>※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 학생기숙사 포함</li> </ul>
수익용기본재산	<p><b>학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기본재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학교법인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재정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용하여야함</li> <li>※ 학교법인은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, 발생한 소득의 80%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여야함</li> </ul>